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

의 안 번 호	375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9. 11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,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절 차 : 기관 · 단체 추천 ⇒ 공적심의 ⇒ 의회동의 ⇒ 수여
- 나. 수여시기 : 수시
- 다. 수여자 예우
 - ▶ 시 주관 각종행사 초청
 - ▶ 애경사시 축조전 및 화환 전달 등
- 라. 금회 수여대상자(2명)
 - ▶ 前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박인철 이사장
 - ▶ 모스크바 국립공대 류근철 교수

3. 수여대상자 현황 및 공로개요

공로조서

주 소	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대림가락아파트 6-403		
소속 및 직위	前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	재직기간	'05.9.1~'08.7.30
성명	박 인 철(朴寅哲)	생년월일	1950. 6. 9

○ 연구성과 사업화

- 특구내 공공기술의 조기사업화를 위한 산·학·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
※ 44개 과제, 130억원 지원
- 대기업·중소기업·연구소간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융복합기술의 사업화 시스템 구축
- 세계적 디자인전문회사 이노디자인(美 실리콘밸리 소재)과 공동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개설해 특구의 첨단기술을 상품화

○ 벤처생태계 조성

- 국내 최대 규모의 대덕특구투자조합(800억원)을 조성·운영하여 특구내 기술금융 활성화 / 13개 기업, 269억원 투자
- 연구소기업,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시행
 - 국세 : 소득세·법인세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 - 지방세 : 취득세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7년간 100%, 3년간 50% 감면
- 창업경영지원센터('06.2) 및 기술종합병원 운영('06.8)
 - 160여개 기관 197건 경영애로 해결(30여 전문컨설팅기관 참여)
 - 290여명의 전문가가 기술의사로 참여, 102개 기업 236건 상담지원

○ 글로벌환경 구축

- 소피아앙티폴리스(프랑스) 등 10개 해외 혁신클러스터와 비즈니스 연계체계 구축
 - 공동연구센터 유치(1개) 및 기업·연구소 유치 추진(4개)
 - 2010년 IASP 총회 유치, 대덕특구가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
- * IASP :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s)

주요경력			
년월	이력	년월	이력
1991.4~1993.3	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비서관	1997.1~1999.1	재정경제원 ASEM 준비 기획단 국장
1994.7~1997.1	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국장	2003.4~2005.7	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, 기획관리실장, 정책홍보관리실장

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.

2008년 9월 일
추천자 : 대전광역시장

공로조서

주 소	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311-401		
소속 및 직위	모스크바 국립공대 교수	재 직 기 간	'95 ~ 현재
성 명	류 근 철(柳根哲)	생 년 월 일	1926. 12. 21

- 지역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(KAIST)에 발전기금 578억을 기부하여 지역 과학인재양성에 큰 기여 ('08. 8. 14)
 - 개인기부 사상 최고액인 578억 상당의 부동산과 골동품 기부
- 아름다운 기부와 나눔정신을 대전지역에 확산하여 연이은 기부창출로 기부문화 조성 및 발전기여
- 지역대학 한국과학기술원(KAIST)이 세계최고대학으로 가는 목표 달성을 재정적 기여로 지역대학의 위상 제고

주 요 경 력

년 월	이 력	년 월	이 력
1976년	경희한방의료원 부원장	1988년	명지대 의과학 연구 교수
1982년	류근철 의과학연구소장	1995년	모스크바 국립공대 교수

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.

2008년 9월 일

추천자 : 대전광역시장

관계법령

○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

제2조(명예시민증 수여) ①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”이라 한다)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회기중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 대전광역시장이 수여하고 사후 대전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

○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사무 처리규정

제2조(수여대상범위) ①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”이라 한다)의 수여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에 협력한 자
2.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, 해외교포, 타 시·도 출신인사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
3. 대전광역시의 문화·예술·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
4. 과학·기술·경제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
5.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단체장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
6.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4조(선정절차) ② 「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」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설명하고, 사후 의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